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

매뉴얼



클릭하고
말하세요

도민 여러분의 공익제보,
이제 전담 라인으로 직접하고, 단일창구로 간편하게!
공익제보 핫라인을 클릭해보세요
<http://hotline.g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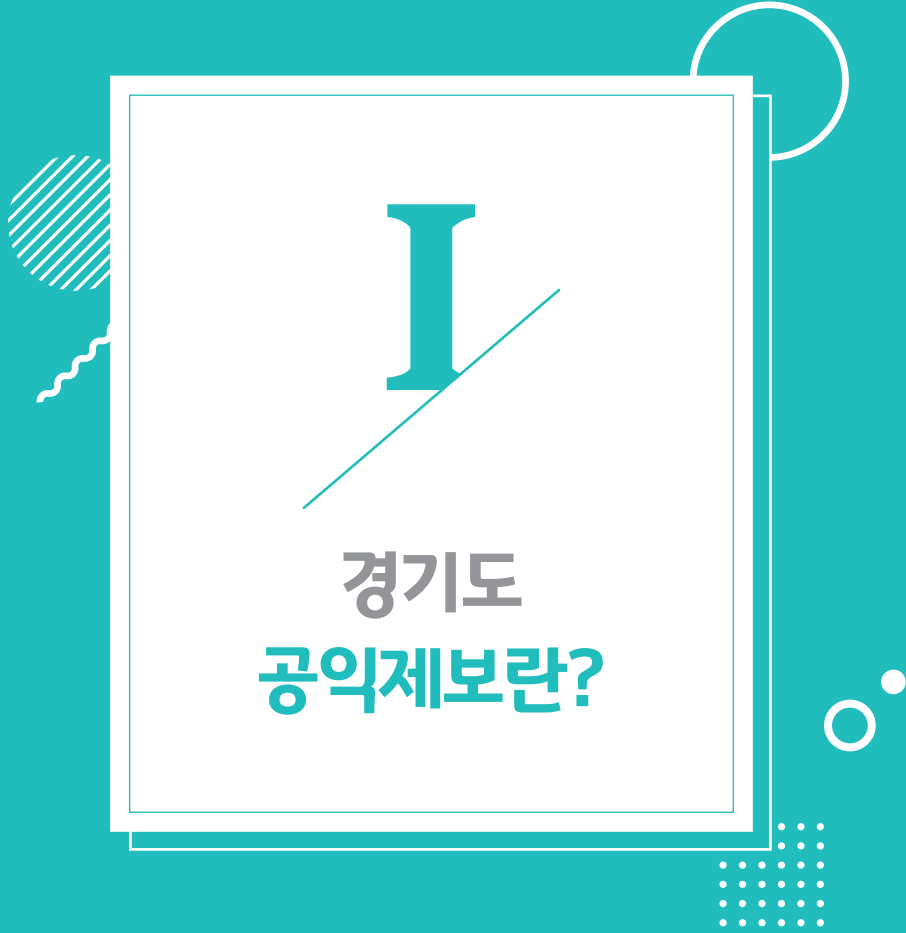


Contents

경 기 도 공 익 제 보 지 원 매 뉴 얼

01 / 공익제보의 정의	005
1. 공익제보의 정의	007
2. 공익신고	009
3. 부패행위신고	019
4.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	026
02 /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	029
1. 공익제보의 접수	031
2. 공익제보의 조사 · 처리	037
03 /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043
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045
2.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 · 포상 · 구조금 지급 제도	052
04 / 업무 관련 Q&A	069
1. 공익신고의 개념 관련	071
2.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072
3.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077
4. 공익신고자 보상 관련	079
05 /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081
1. 공익침해행위	083
2. 부패행위	101
3.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107
06 / 부 록	115
1. 공익신고자 보호법	117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2
3.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163
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170
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및 소관부처 목록	184





I

경기도 공익제보란?

01 / 공익제보의 정의

02 / 공익신고

03 / 부패행위신고

04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

01 / 경기도 공익제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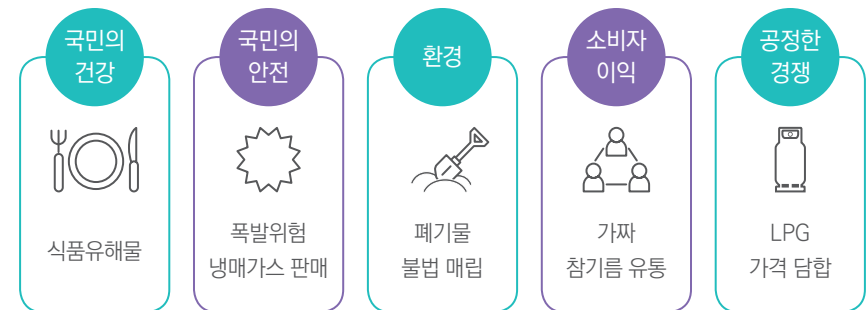


1 공익제보의 정의¹

경기도 소관 사무 관련 공익신고, 부패행위신고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

1)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 467개² 법률 6개 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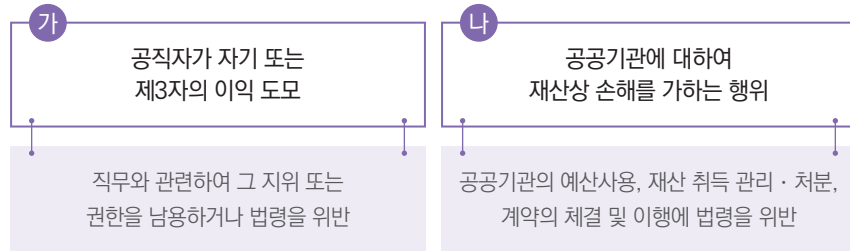
⊕ 기타 공공의 이익 분야 추가

¹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²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0. 11. 20일 부터 적용(11. 20일 이전은 284개 법률)

2) 부패행위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



가 나 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행동강령위반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위반행위 신고



2 공익신고

1)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³

가.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공익”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해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익침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러한 사전적, 일반적 개념과는 구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를 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 공익신고 대상 46개 법률을 위반하여 ③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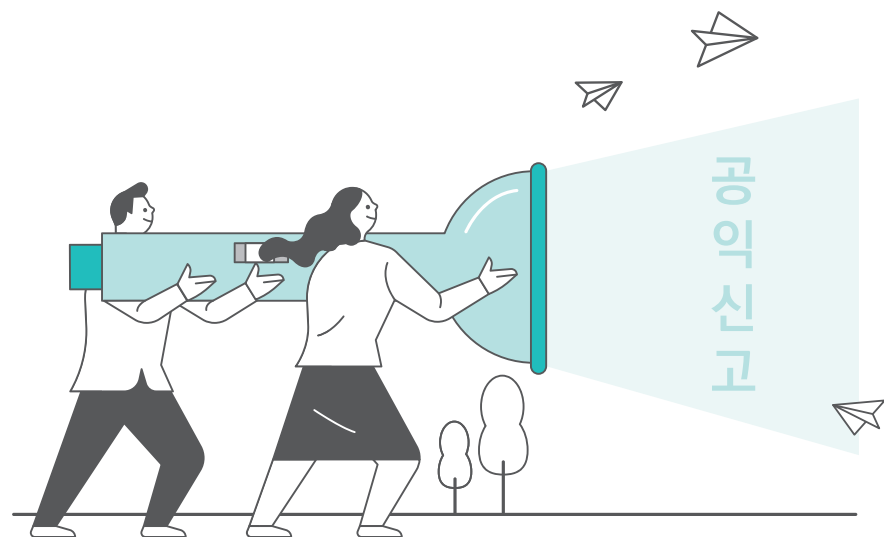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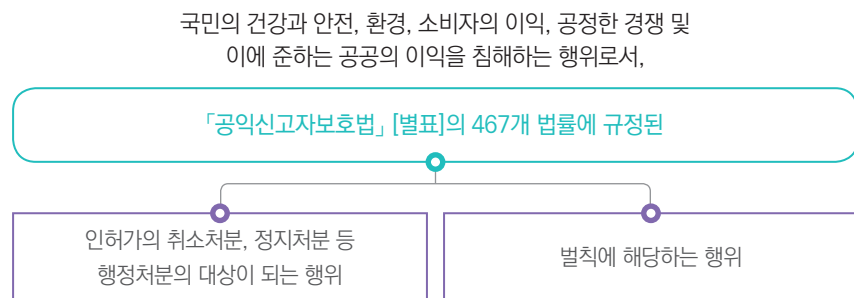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는 등 법률 위반시 제재수위도 높아 사전에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열거적으로 정한 것이다.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46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

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467개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467개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467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허가의 취소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467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벌에 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벌칙의 종류 및 행정처분의 대상

벌칙의 종류 (형법 제41조)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	----	-------	-------	----	----	----	----

행정처분의 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나. 공익신고의 개념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해 감독권·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고, 진정 외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이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 수사의 단서 제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이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고제도가 아니라 이미 467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수사기관 및 관련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가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 공익신고의 형태

-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진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고소**: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고발**: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제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수사의 단서 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다.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익명·가명신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익명신고 또는 가명신고 등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익명·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위, 부정목적 신고

공익신고가 개인의 이익이나 타인에 대한 위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의 성실의무와 부정목적의 신고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라. '공익신고등'의 개념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소송 등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익신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등”이라고 한다.

마. 공익신고자의 개념

‘공익신고자’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고적격을 내부자 등으로 특별히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의 증가하는 다양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감시 강화가 필요하고, 소비자 이익, 공정거래, 환경 분야에 관련해서는 내부자 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이 제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자로 신고주체를 한정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색출이 용이하고 유추 가능성이 높아져 신고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보호대상이 되며, 내부신고자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와 앞에서 설명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협조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바. 내부공익신고자

내부공익신고자의 의미

공익신고는 크게 외부 공익신고와 내부 공익신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 공익신고는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내부 공익신고는 기업이나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적·자율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저비용·고효율의 통제수단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내부공익신고자의 범위

내부 공익신고자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 소속 근로자, 인턴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근무관계에 있는 자, ② 납품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 직원과 같은 피신고자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계열회사나 산하단체 직원과 같이 피신고자의 사실상 영향력 관계에 있는 자, ④ 학생 등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① 근무관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간의 장단, 계속성을 불문하고 피신고자에 소속된 다양한 형태의 근무관계의 신고자도 포함
-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맺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로서 인턴 직원 등도 포함됨

② 계약관계

- 기본적으로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른 갑을관계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 구매자, 일반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음
- 일시적인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되며, 계약에 따른 직접 업무 수행자에 한정되지 않음

③ 사실상 영향력 관계

- 피신고자와 신고자가 직접 고용관계,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피신고자가 신고자가 소속된 회사 등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임
- 피신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산하 공직유관단체 직원, 피신고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는 계열회사 관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의 직원 등

④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

-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지도, 관리 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사실상 지도, 관리 감독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⁴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였던 자
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6.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4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7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2)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예시)

가. 건강분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학교급식법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



의료법, 약사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나. 안전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해사안전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다. 환경분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약취방지법

약취관리지역에 약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물환경보전법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라. 소비자이익 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마. 공정한경쟁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격 담합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법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절차법

사업장을 홍보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 하는 행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방위사업법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부패행위신고

1) 부패행위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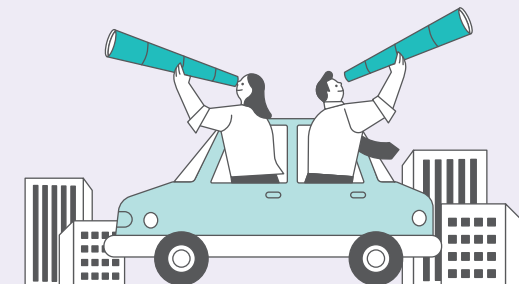
가.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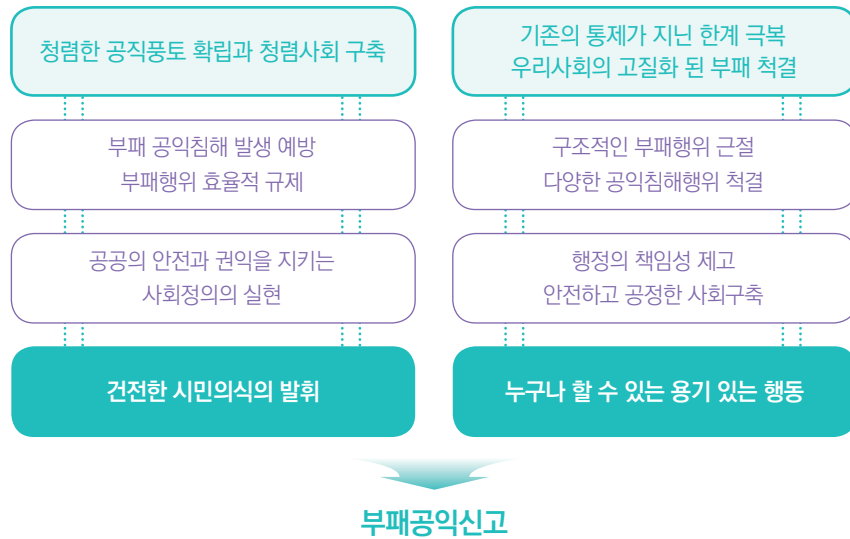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필요성



나. 부패행위의 판단기준

‘가’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 기준

① 공직자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⁵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부패행위의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⁵ 그 밖의 다른 법률이란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감사원법에 따른 법률 등을 말한다.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말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 뇌물죄에 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 해석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③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형식적으로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물론, 외관상 직무권한과 아무 관련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도 직위 또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⁶

④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법령을 위반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령이란 반드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반 법령을 포함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뇌물죄 등이 그 전형적인 법령위반 행위이며,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의무인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공정 의무, 비밀 준수 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이익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산, 비재산(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것),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나 반사적 이익은 제외한다.

※ 부패행위는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다르므로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벌 가능

‘나’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 기준

①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직자

윤리법」 제3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또한 최근 법 개정(17.4월)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부패행위의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② 예산사용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 계약의 체결·이행

‘공적재산 침해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매매·관리하는 사인 또는 사기업의 공재산 침해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공모 또는 담합하여 행하는 부패행위는 물론 공직자를 기망하여 사기업 등이 행하는 부패행위도 포함된다.

☞ 참고 판례

(나)목의 “공공기관 재산”의 의미와 범위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목의 ‘공공기관 재산’의 범위에는 ① 부동산과 그 중물, ②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중물, ③ 공공사업 또는 공공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⑥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⑦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⑧ 부동산, 선박 등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 속한다고 볼 것이되, 그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 또는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일정한 명목의 금원을 부과·징수하는 권리나 이에 따라 납부받은 금원 등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기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0구합 38622 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6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6570, 판결

③ 법령위반

법령위반에 재량권남용은 제외되지만, 직무관련 공직자가 관련된 협의의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남용을 포함한다.

☞ 참고 판례

위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제4호 나목이 규정한 부패행위는 그 가목이 규정한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익 도모 행위'나 다목이 규정한 '부패행위의 강요 및 은폐' 등 다른 부패행위의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새김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으리라는 등의 경우는 위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09 누38622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서울고법)

③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의 발생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충분하고 사후에 손해의 회복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성립한다.

‘다’목에 따른 부패행위 판단 기준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와 ‘공적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부패행위를 말한다.

기타

순수한 사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패·비리행위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민원성·탄원성 진정도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패행위자가 부패행위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에는 공직자의 신분을 떠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2) 부패행위 유형(예시)

부패유형	예 시
중 · 수뢰	•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향응수수	•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공금 횡령 · 유용	• 업체에 하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세외 수입 등을 횡령하는 행위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권남용	•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무유기	•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 도 이를 방치한 행위
비밀누설	• 조사 · 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
문서 위 · 변조	•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 •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시하여 특정업체가 고가로 낙찰되도록 한 행위 • 지체상금 ·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기	•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불법적 이익 제한	•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한한 경우
금품 제공 강요	•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어쩔수 없이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

4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

1)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2)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기준(예시)

행위 기준	위반 행위(예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 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토록 부당 지시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심의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 A시장은 지방선거에 따라 처음으로 공직에 취임하고도, 30일 이내에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서(3년간) 미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공무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자문을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자문료 수수
가족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가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조카가 합격 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
수익계약 체결 제한	• 구매계약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익계약을 통해 전산용품을 구매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퇴직 선배로부터 골프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에 참석하면서 신고하지 않음
특혜 배제	• B기관 운영국장이 기관장의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익계약 용역 발주
예산목적외 사용 금지	• 일선 기관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 용도로 사용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처리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고 처리

행위 기준	위반 행위(예시)
인사청탁금지	• C시청 국장이 직원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에게 직원의 승진을 청탁
이권개입금지	• D군청 환경관리과장이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 하게 해 줌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자신의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홍보를 위해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기재하는 행위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민간기업에 특정한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 • 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E시청 도시개발국장이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공공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금지	• 업무용으로 배정된 소형트럭을 개인 주말농장에 사용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청소업체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 편의를 제공받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갑질행위)	•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 •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
금품등의 수수금지	• 공무원이 직무 관련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과 회식, 직원 야근 식대 등으로 사용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 해외 연수를 가면서 산하기관에 해당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구하는 행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 강의 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령하고 미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함
경조사 통지 제한	• F구청 국장의 자녀 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FAX로 통지

2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

01 / 공익제보의 접수

02 / 공익제보의 조사·처리

02 /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절차

1 공익제보의 접수

1) 공익제보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서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

	
신고서 기재사항 ⁷	신고방법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 (홈페이지/모바일)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공정경기2580 → http://hotline.gg.go.kr • (우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공익제보지원팀(우 : 16444) • (FAX) 031-8008-2059

☎ 상담전화 : 031-8008-2580 (상담만 가능하며 접수 불가)

※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고 가능함. 단, 구술신고서에 신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함(공익신고자 보호법 8조)

7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



안심하세요!!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⁸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 운영

-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 신고
⇒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7명 위촉·운영
※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당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나,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향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원상회복 정송일 경우 구조금 지급

불이익 금지

- 도지사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공익제보신고서 서식

공 익 제 보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동의 ☐ 부동의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경 기 도 지 사 귀하

210mm 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6조

비실명 변호사 대리 신고제 운영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운영 절차



변호사 명단

분야	성명	이메일	현 소속 및 직위
부패	신석준	aeasa135@naver.com	
	이명준	badook98@naver.com	
	최성중	choguan@hanmail.net	
	박춘관	sglawoffice5010@naver.com	
환경	김현수	holysoo@naver.com	
	이명근	idicon@hanmail.net	
	이보라	holabogado@naver.com	
	김정환	hwan_world@daum.net	경기중앙
여성·아동	이수정	lawyersjung@gmail.com	지방변호사회
	이환희	hwanhee-lawyer@naver.com	변호사
	이루비	rubylawyer@naver.com	
	박경훈	victorypkh@naver.com	
시설·안전	한상엽	siby77@hanmail.net	
	구민걸	kukuj@hanmail.net	
복지	서정현	nackboom@naver.com	
인권	신창주	shinhero@hanmail.net	
	최선영	sychoi0625@gmail.com	

2) 제보 내용의 확인

확인사항

1. 제보자(조례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공익제보자와 피신고자 또는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공익제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공익제보를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제보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제보자가 조사기관의 확인 및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가. 형식적 요건의 확인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이 기재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인지 여부 및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이 첨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 경우 반드시 특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제보로 접수 가능하다.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제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났는지,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하여 감사, 조사하였거나 진

행 중인 사항인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의 종결 처리 여부를 검토한다.

나. 실질적 요건의 확인

공익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①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②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 등 6대 공익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패신고의 경우도 신고내용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공익제보자에게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기관에서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의 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익제보의 조사·처리

1) 개 요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①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익제보를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방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제보를 접수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재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에서는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이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조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감독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익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종결 처리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2580’으로 접수된 제보의 조사기관 분류

구분	제보 제기 내용	조사 기관
부패신고 및 공직자 비리 신고	• 도 공무원 관련 • 도 공직유관기관 임원 관련 • 도 공무원 등 / 업체 공모 관련 • 종합적 부패 관련	도 조사담당관
	• 도 계약 / 위탁 / 지원 업체 등 관련	도 소관업무 담당관
	• 시·군 공무원 관련 • 시·군 계약 / 위탁 / 지원 업체 등 관련	시·군 감사담당관 → 시·군 소관업무 과
	• 공직유관기관 직원 관련 • 공직유관기관 계약 / 위탁 / 지원 업체 등 관련	기관 감사실
공익신고	• 도 소관사무 공익신고	도 소관업무 담당관
	• 시·군 소관사무 공익신고	시·군 감사담당관 → 시·군 소관업무 과

2) 제보내용의 조사·처리

조사기관은 접수된 공익제보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사항인 경우 직접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기관은 제보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종결사유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9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제2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공익제보의 종결 사유

1. 제보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제보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또는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 제보 내용이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다만,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종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참고 2013.5.16. 서울행정법원 2012 구합 32532).

조사기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제보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공익제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익제보의 이송·재이첩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제보를 직접 접수받은 경우 신고 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바로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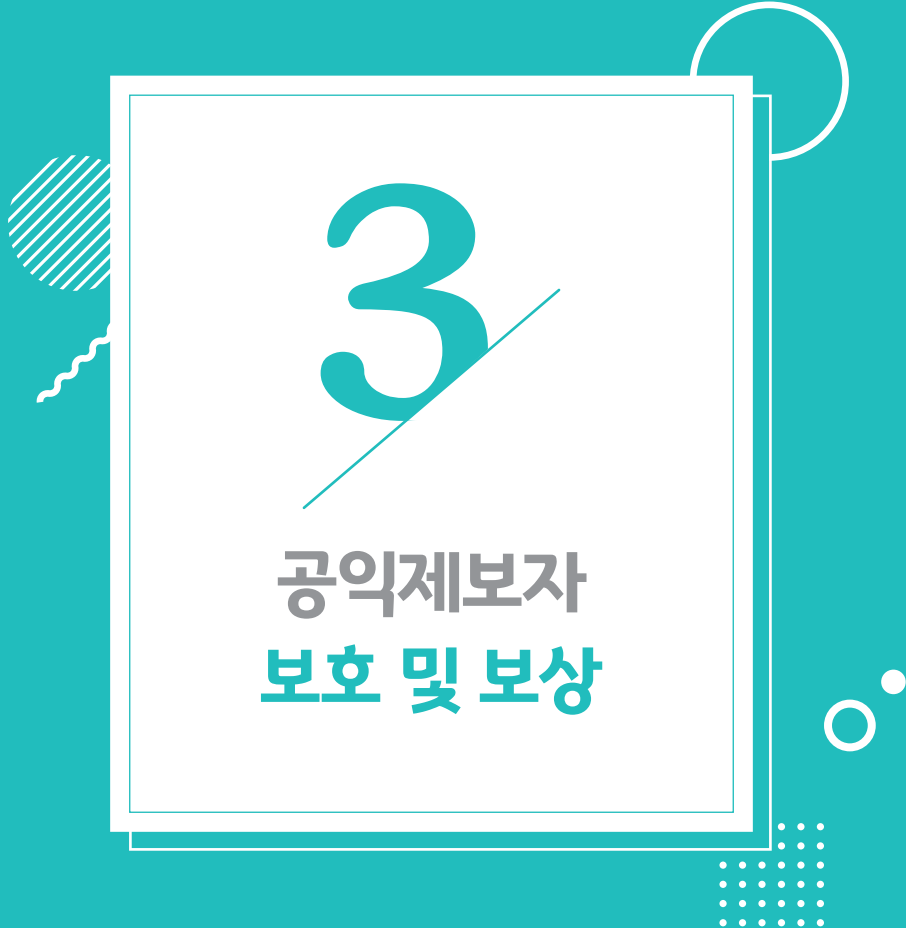
다만, 이송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송하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적시에 공익제보를 처리하여 불법행위를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제보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공익제보 처리 흐름도





3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01 /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02 /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



1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1)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공익제보 대상 기관은 공익제보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이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제보를 접수·처리하는 조사기관의 담당자는 제보 사건을 처리하거나 이첩·이송,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담긴 제보내용이 노출되거나 알려지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원인별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색출행위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례

비리의혹 신고에 대해 조사를 받은 해당 시설 직원들 스스로 제보자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여 국장이 제보자를 포함한 직원들 동의를 받아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제보자 확인

신고를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사례

공익신고와 일반민원이 혼재된 진정이 신고창구와 일반민원창구에 동시에 접수되고, 일반 민원 창구에 접수된 진정을 인적사항만 삭제하고 민원내용을 그대로 피진정업체에 송부하여 해당 업체 사장이 제보자에게 전화하여 취하 중응

유착관계에 의한 상호 교환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을 노출한 사례

A학교 관련 언론보도가 있자 B기관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기관 출신 A학교 직원 C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상황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내부보고 후, 제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해당 문건의 사진을 C에게 휴대폰으로 전송

🔍 신고처리 단계에 따른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신고사건 처리부서 배분과정

신고센터에서 접수 받은 신고사건을 모아서 처리부서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1주일 단위로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제보자, 주요내용, 담당부서 등을 포함하여 전 소관부서 직원에게 메모보고

조사 단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서를 그대로 피신고자에게 보여줬으나 그 신고내용으로 볼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어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신고자임을 확인한 사례

쟁송 단계

신고사건 조사 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A학교 교사들이 소청을 청구하자, A학교에서 소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B교육청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요구했고, B 교육청에서 제보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A학교에 송부

보도자료 배포 단계

신고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신고자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2) 책임의 감면

가. 공익신고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으로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나중에 스스로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하는 이유로는 첫째, 공익신고자등이 상급자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고, 둘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것이므로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시정을 위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에 의한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형벌, 징계 뿐 아니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허위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불이익조치등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부패행위 신고자와 협조자 등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 불이익조치의 종류¹⁰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이러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불이익 조치 유형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벌칙조항 없음

10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7호

4) 신변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사항)

가.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2항)¹¹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¹¹ 실제로 공익신고자들의 신변보호조치 필요성이 급박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즉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하고 있으며, 신변보호조치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5) 보호조치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사항)

가.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 후에 발생한 불이익조치 뿐 아니라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 등도 보호조치 대상자에 포함된다.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나. 부패신고

부패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

1) 보상금¹²

가. 개 념

보상금은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경기도의 재정수입이 공익제보로 인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그 기여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공익신고의 경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며, 이는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④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¹³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였던 자
3.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4.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6.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¹²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8조, 제19조

¹³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7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나. 지급 사유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지급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

④ 보상금 지급사유

- ①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②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다. 지급 절차

공익제보자는(공익신고의 경우 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한다.)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라. 산정기준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이며, 상한액은 없고,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의 산정기준¹⁴

지급대상	지급기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보상대상가액 - 1억원이하: 2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초과금액의 4%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그 밖의 행동강령위반 행위	•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¹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별표

비고

1. “보상대상가액”이란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2.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분하여 지급한다.

2) 포상금¹⁵

가. 개 념

공익제보로 인하여 경기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 더 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 사유

포상금은 다음의 사유로 경기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공익제보 활성화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¹⁵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9조

④ 지급사유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부패신고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 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다.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달리, 포상금은 경기도 소관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도 · 시 · 군 등 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거나, 직권으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라. 지급기준

공익신고의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위반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준하여 지급하되,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¹⁶

① 신분상 사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비고

1.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된 형(징역, 금고, 벌금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2. 벌금(노역장유치 포함), 몰수 등 재산형의 경우에는 “④. 금전적 처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3.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들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¹⁶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8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표]

②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2) 1억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7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 7명 미만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2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효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비고

1.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정지처분은 정지처분과 합산하고, 취소·철회·말소 처분은 취소·철회·말소처분과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준용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주의·경고 등 경미한 시정명령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5) 1,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
6) 5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지침 등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7) 100만원 이하	그 밖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비고

1.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령 등의 개정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개정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금전적 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20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7) 100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대규모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3,000만원 이하	공익신고로 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한 대규모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나) 공익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관행적·반복적인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6) 100만원 이하	그 밖에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비고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을 말한다.
2. 국민의 관심도,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증진시책의 도입이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부패행위신고 및 행동강령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¹⁷

① 신분상 사법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2) 1억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3) 5,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4) 3,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5) 1,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
6) 5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비고

1. 2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들을 모두 합산하여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된 형(징역, 금고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4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2) 1억원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0명 이상 3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3) 5,000만원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2명 이상 1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4명이나 7명인 경우
4) 3,000만원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이상 11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3명인 경우
5) 1,000만원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4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명인 경우
6) 500만원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명인 경우

비고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공무원은 1인을 3인으로 간주한다.

③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1억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제에 기여한 경우
3)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제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¹⁷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9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별표]

금액기준	유형
4)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5) 3,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6) 5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비고

-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 법령 등의 개정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일부개정 등 개정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

금액기준	유형
1) 2억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2) 1억 5,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3) 1억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4) 7,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금액기준	유형
5) 5,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6) 3,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7) 1,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8) 5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억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비고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시행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해당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예산 절감액을 재산상 이익 또는 재산상 손실 방지 금액으로 하고,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되는 시점의 당해 연도 1년분 예산액을 재산상 이익 또는 재산상 손실 방지 금액으로 한다.

3) 구조금¹⁸

가. 개 념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한 비용 및 경제적 손실 등으로 제보자가 받은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한다.

나. 지급사유 및 산정기준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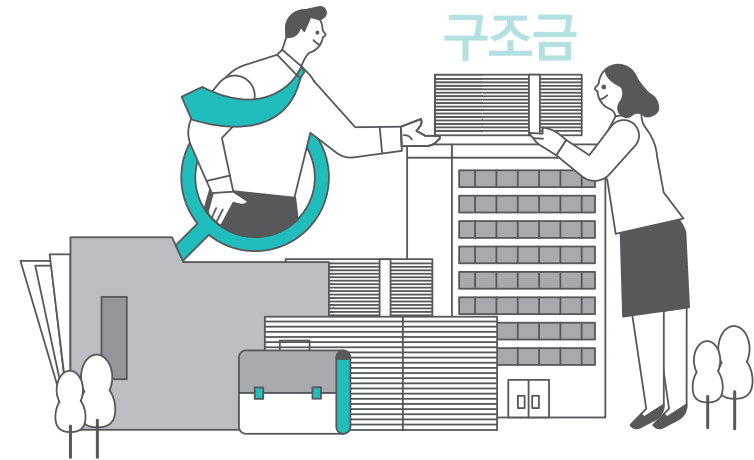
④ 지급사유

-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②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④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 ⑤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임금손실액 산정시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공익제보등으로 인한 피해나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지급절차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18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0조

4

업무 관련 Q&A

01 / 공익신고의 개념 관련

02 /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03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04 / 공익신고자 보상 관련



Q&A 공익신고의 개념 관련

Q 회사의 몇 년 지난 위법행위도 공익신고할 수 있는가?

- ⓐ 공익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행위가 몇 년 지난 것도 신고 가능하다. 다만, 개별법률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종결처리 될 수 있다.

Q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 것인가?

- ⓐ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인지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원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든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Q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 ⓐ 공익신고자는 신고의 동기에 상관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다만,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

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Q 공익신고 기관으로서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조사기관의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는 공공단체도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단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소속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해당 공공단체가 공익신고 기관이 될 수 있다.

Q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가?

- Ⓐ 공익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라 할지라도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공익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Q&A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Q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

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Q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따른 공익신고만 접수해야 하는가?

- Ⓐ 특정한 양식에 따른 신고서가 아니더라도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서 규정한 신고서 서식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조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의 경우 신고서에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의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공익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술신고를 제외한 단순한 전화문의·상담은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Q 공익신고를 접수하면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가?

- Ⓐ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꼭 확인·명시해 두어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공익신고의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즉 ①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침해행위가 467개 공익침해 대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그 위반에 대한 제재인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적합하다.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적시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익명의 공익신고도 접수할 수 있는가?

-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명신고를 전제로 한다. 법 제8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기관등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우편 등으로 익명의 신고가 제출되더라도 이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익명 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이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신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보호·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익명신고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가?

- Ⓐ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신설되어 변호사 대리신고를 통해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변호사가 신고자의 의뢰를 받아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규에 따라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변호사를 명시하고 있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히면서 변호사가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Q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접수해야 하는가?

- Ⓐ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법 제8조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서 공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

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공익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어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Q 증거자료 제출 없이 구체적인 기술만으로 조사가 가능한가?

- Ⓐ 공익신고를 할 때에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기관에서는 공익신고의 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기술된 사항만으로도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 사건을 송부하거나 조사·수사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다.

Q 공익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 Ⓐ 공익신고 기관은 정당한 공익신고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Q 접수한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조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

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공익침해 행위가 관할 및 직무범위 내의 사안인지를 확인하여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Q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신고내용 및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관할 및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으로 공익신고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접수한 공익신고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가?

- Ⓐ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가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Q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증명자료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가?

- Ⓐ 그렇지 않다. 법 제8조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종결하기 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가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하는가?

- Ⓐ 그렇다. 법 제11조는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그 가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의 준용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받은 조사·수사기관의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Q&A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Q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노출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스스로 미루어 짐작한 경우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보복이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피신고자가 스스로 정황상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까지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Q 공익신고자나 협조자의 인적사항 외에 신고내용 등은 공개해도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Q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분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 형,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Q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는가?

A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면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러한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

Q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기업 등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Q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그렇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분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A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및 이에 대한 보호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도 해당할 수 있어,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공익침해행위가 없더라도 특별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A 공익신고자 보상 관련

Q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A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파파차리)의 신고가 적발이 용이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집중되면서 영세업소의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공익신고가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4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다. 2015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보상금을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내부 공익신고자에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부 공

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였다.

Q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A** 그렇지 않다.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검색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유독성 폐수의 심야시간 무단 방출 등 공익침해 행위를 알고 있던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불시에 해고를 당한 후 공익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익신고 후 피신고자의 폭행·협박 등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 A** 그렇지 않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규모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5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01 / 공익침해행위

02 / 부패행위

03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05 /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1 공익침해행위

가. 건강분야

축산물 위생관리법

- ①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경우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7조 / 제22조 / 제45조
- ② 영업자가 가축을 도살·처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7조 / 제22조 / 제47조
- ③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않는 경우
 - ➡ 영업허가취소·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8조제2항 / 제27조제1항 / 제47조제1항
- ④ 도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 시설 개선 명령
 - ➡ 제21조제1항/ 제35조

- ⑤ 변경허가 없이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영업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 영업허가취소·정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22조제2항 / 제27조제1항 / 제45조
- ⑥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원료수불서류 작성·보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 영업허가취소·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7조 / 제31조제2항 / 제47조

종자산업법

- ①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행위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43조 / 제56조제1항

농산물 품질관리법

-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56조 / 제123조제1항
- ②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이용하는 농지·여장·용수·자재 등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63조제1항 / 제120조

식물방역법

- ①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 명령에 따라 매몰된 토지를 불법 발굴한 경우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7조의2 / 제48조
- ②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방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6조 / 제50조

사료관리법

- ①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사료를 제조한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1항 / 제33조
- ②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8조제1항 / 제13조제1항 / 제34조
- ③ 사료안전관리인이 사료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않거나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0조제3항 / 제36조

-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등록취소·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 제13조 / 제25조 / 제26조
- ⑤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를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영업허가취소·정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1조제2항 / 제25조 / 제26조

먹는물 관리법

- ① 먹는 샘물 외의 물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먹는샘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 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 / 제57조1호
-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9조제1항 / 제61조제2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①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3조제2항 / 제28조
- ②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4조제3항 / 제30조

나. 안전분야

건설산업기본법

- ①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
 -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 제16조 / 제82조제2항
- ②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 제29조제1항 / 제82조제2항
- ③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 제29조제2항 / 제82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 ①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 ➡ 임원의 해임명령
 - ➡ 제22조 / 제82조제2항
-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행위
 -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 제45조 / 제58조제2항
- ③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도지사의 허가없이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수사의뢰)
 - ➡ 제23조제3항 / 제42조제2항 / 제53조

건설기술 진흥법

- ①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험(危害)을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행위
 - ➡ 영업정지, 2억원 이하의 과징금
 - ➡ 제31조 / 제3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① 다중이용업주가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로 유지 및 관리하지 않는 행위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1조 / 제2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①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경우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9조 / 제38조
- ②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 ➡ 시정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9조 / 제30조 / 제4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조치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0조 / 제53조
-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않은 행위
 -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 제9조 / 제53조
- ③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조제1항 / 제48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법

- ① 위험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행위
 - ➡ [설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조 / 제34조의3
- ② 위험물 제조소 등을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 제6조 / 제34조의2 / 제36조제2호
- ③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또는 유통하는 행위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0조 / 제35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미인증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조 / 제49조
-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경우
 - ➡ 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 ➡ 제9조제2항 / 제40조
- ③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가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0조 / 제51조

전기공사업법

- ①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
 - ➡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0조 / 제28조 / 제42조
- ②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기는 행위
 - ➡ 시정명령,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6조 / 제27조 / 제43조
- ③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 ➡ 시정명령,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7조 / 제27조 / 제43조

- ④ 전기공사기술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 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는 행위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8조의2 / 제42조
- ⑤ 전기공사기술자가 전기공사업법 및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행위
 - ➡ 시정명령,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2조 / 27조 / 제43조
- ⑥ 공사업자가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행위
 - ➡ 시정명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4조 / 제27조 / 제4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 ①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에 공사와 감리를 함께하는 행위
 - ➡ 시정명령, 등록의 취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2조 / 제65조 / 제66조 / 제74조
- ②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
 - ➡ 등록의 취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4조 / 제66조 / 제74조
- ③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 ➡ 시정명령, 등록의 취소
 - ➡ 제31조의4 / 제65조 / 제66조

- ④ 공사업자가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행위
 - ➡ 시정명령, 등록의 취소, 과징금 부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3조 / 제65조 / 제66조 / 제66조의2 / 제76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 발생시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을 미설치하거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8조 / 제29조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

소방기본법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8조 / 제50조
- ②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함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9조제1항 / 제56조제1항
-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1조제3항 / 제56조제1항
- ④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1조의2제2항 / 제56조제2항

소방장비관리법

- ①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경우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1조제2항 / 제48조

다. 환경분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허가취소·정지, 과징금부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3조제1항 / 제25조 / 제26조 / 제66조
-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 ➡ 허가취소·정지, 과징금부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3조제2항 / 제25조 / 제26조 / 제66조
-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행위 (단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써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 ➡ 반입정지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3조의2 / 제25조 / 제66조
-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 ➡ 허가 취소·정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2조 / 제25조 / 제66조

대기환경보전법

-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26조 / 제36조 / 제89조
- ②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 가는 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제31조제1항 / 제94조

물환경보전법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3조 / 제76조
- ②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개선명령 처분 및 불이행시 조업정지 명령
 - ➡ 제32조 / 제37조 / 제39조 / 제40조
- ③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 ➡ 허가취소,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하의 조업정지 명령
 - ➡ 제38조제1항 / 제42조
- ④ 조업 중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는 경우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8조제3항

자연공원법

[도립공원에서의 금지행위]

- ①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 흡연행위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취사행위, 대피소에서의 음주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행위
 - ➡ 20만원이하의 과태료
 - ➡ 제27조 / 제86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① 누구든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그 점용·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 허가취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8조 / 제19조 / 제62조
- ②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하는 행위, 그 매립 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 허가취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8조 / 제52조 / 제62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①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및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 ※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
 - ➡ 제16조 / 제17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①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 ➡ 허가 취소
 - ➡ 제20조 / 제21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①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20조 / 제21조
- ②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1조 / 제13조 / 제18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① 도지사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경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 조치 위반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8조제1항제2호 / 제31조제1항
 -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 위반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8조제1항제1호 / 제31조제1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관한법률

- ① 수목원(국립수목원 제외)이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휴원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시정요구 후 미이행시 등록 취소
 - ➡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제17조 / 제18조
- ② 도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7조의2제1호 / 제24조
- ③ 도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7조의2제2호·제3호 / 제24조 제1항

라. 소비자 이익 분야

공인중개사법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8조의2 / 제49조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18조의2 / 제51조
- ③ 공인중개사가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거나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
 - ➡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 ➡ 제36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①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행위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5조 / 제18조
-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5조 / 제6조 / 제6조의2 / 제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 ①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② 대부계약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 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③ 영업소에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④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에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5조의2 / 제6조 / 제9조 / 제20조
- 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⑥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조 / 제19조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②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⑤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3조 / 제23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6조



마. 공정한 경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① 택시운송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은 행위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6조 / 제23조

2 부패행위

유형1 관급 공사 및 용역의 비용 편취

- ✓ 관급공사 시공업체가 고속도로터널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시공하거나, 일부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부당 편취
→ 편취한 공사비 10억 6,6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132,605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준설공사업체가 항만준설장비의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편취
→ 편취한 공사비 8억 1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47,788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공공기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저가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공사비를 편취

➡ 편취한 공사비 1억 9,9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47,788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타일 판매업자가 실제 공급하기로 계약된 타일 대신, 유사한 타일로 바꾸어 납품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

➡ 편취한 공사비 2억 6,1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21,305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연구용역과제 수행 업체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을 주관기관에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용을 편취

➡ 편취한 보조금 6억 6,5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83,251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주받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용역비를 부당 편취

➡ 편취한 보조금 2억 5,4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40,829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유형2 보조금 부정 수급

- ✓ 마을이장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로 포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

➡ 편취한 보조금 8,259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10,514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사회복지법인인 보조금(생계비)을 지급받은 후 타 용도로 사용함

➡ 편취한 보조금 1억 5,6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27,944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2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A복지시설에 상담지도원으로 채용된 직원을 B복지시설 사무원으로 전담 근무하도록 하는 등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부정 수급

➡ 편취한 보조금 4,96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14,88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돕기 위해 설치한 민간위탁기관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본인이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상근직으로 등록하여 A시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았고, A시에 서 피신고자가 비상근직임을 확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자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허위 청구

➡ 편취한 보조금 2,2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4,56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지방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조건에 따라 2년간 해당설비를 유지,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하여 보조금을 편취

➡ 편취한 보조금 3억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63,056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목재펠릿난방기 납품업체가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지원 농가에 난방기를 납품하면서 비슷한 사양의 타사 제품보다 2배 이상 납품단가를 부풀려 보조금 편취

➡ 편취한 보조금 2억 1,9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36,778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6년 권익위)

- ✓ ○○예술학교 영화촌 총장과 영화감독이 ○○시로부터 영화제작 지원 보조금을 받아 허위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

➡ 편취한 보조금 8,032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16,006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거나,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의 실적을 부풀려 강사료를 지급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 **편취한 보조금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14,902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A문화축제제전위원회 전임 사무국장이 B도로부터 A문화축제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사업비 집행증빙자료로 보조금을 횡령

➡ **부패행위자 신분상 처분(기소1, 기소유예1)**

⚡ **신고자에게 금 5,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5년 권익위)**

- ✓ 시외버스업체가 비수익 노선 운행을 이유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노선을 일부 운행하지 않거나 결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

➡ **편취한 보조금 2억 6,6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43,295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6년 권익위)**

- ✓ 장기요양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의 대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노인복지센터를 사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

➡ **편취한 보조금 5,4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10,80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6년 권익위)**

- ✓ 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공한 친환경 농산물 물류창고의 일부를 김치가공공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 목적 외로 사용

➡ **편취한 보조금 6,000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12,191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6년 권익위)**

유형3 공무원 등의 법령 위반

- ✓ 직무관련 업체 법인 차량을 무상 제공 받아 사적 이용(금품 등 수수)

➡ **징계처분(해임 1명) 및 징계부가금 24,140천원 부과**

⚡ **신고자에게 금 10,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7년 경기도)**

- ✓ 방염제도를 강화하면서 방염업체들로부터 식사 및 유흥주점에서 향응 수수

➡ **징계처분(정직 1명, 견책 2명)**

⚡ **신고자에게 금 6,6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6년 경기도)**

- ✓ 난방유를 주유소 사장과 공모하여 편취

➡ **징계처분(파면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등)**

⚡ **신고자에게 금 10,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5년 경기도)**

- ✓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이 가로청소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입힘

➡ **가로청소 위탁사업비 13억 8,500만원 감액 발생**

⚡ **신고자에게 금 164,536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6년 권익위)**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A회사가 B군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B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었고, B군 담당자는 이에 협조

➡ **사건관련자 2명 징역형 선고, 1명 징계처분**

⚡ **신고자에게 금 5,00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공공기관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서로 공모하여 A제품을 입고시켰다가 설치하지 않고 반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정 수급

➡ **편취한 공사비 4억 2,273만원 환수 결정**

⚡ **신고자에게 금 45,627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담당자가 정보화사업 외주업체로부터 숙소 및 차량 등 편익을 수수

➡ 사건관련자 1명 징계처분

※ 신고자에게 금 3,00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공공기관의 주차장 관리구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에 손실을 초래

➡ 사건관련자 3명 징계처분

※ 신고자에게 금 5,000천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17년 권익위)

- ✓ 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기관에 재정 손실 초래

➡ 사건관련자 1명 징계처분

※ 신고자에게 금 1,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9년 경기도)

- ✓ 시의원이 아들의 취업 관련 인사 청탁을 하여 해당 경력이 없음에도 정식 경력직원으로 채용되게 함

➡ 사건 관련자 2명 징계처분

※ 신고자에게 금 1,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9년 경기도)

- ✓ 비정규직의 정규직 발령 과정에서 해당 피신고자들이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음

➡ 사건 관련자 3명 징계처분

※ 신고자에게 금 3,0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6년 권익위)

- ✓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구내식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토록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제3자의 이익을 얻도록 함

➡ 사건 관련자 1명 징계처분

※ 신고자에게 금 2,500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6년 권익위)

- ✓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대신 짊어주는 당번을 정하여 허위로 초과근무를 찍는 수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 초과근무수당 830만원 환수

※ 신고자에게 금 1,671천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15년 권익위)

3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유형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
- ✓ 대형 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승인 해주도록 부당지시
- ✓ 포상대상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초 평가기준과 달리 특정인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상향 기재토록 지시

유형2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 ✓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 ✓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심의
- ✓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A회사에 최고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 줌

유형3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 ✓ A구청장이 소속기관의 물품 구매계약과 관련, 공직 임용 전 자신이 근무했던 C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 ✓ B시장은 18. 6월 지방선거에 따라 처음으로 공직에 취임, 3개월 이내에 공직 취임 전의(3년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

유형4 가족 채용 제한

- ✓ 모 군청 간부공무원은 군청 사무보조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 응시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수차례 알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최종 합격 처리됨
- ✓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조카가 합격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

- ✓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그 산하기관의 감독부처 소속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추천
- ✓ 산하기관 직원 채용시 감독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

유형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 간부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퇴직 선배로부터 골프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음
- ✓ 모 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 협회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로부터 향응 수수하고도 신고하지 않음

유형6 특혜의 배제

- ✓ 학교장이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으로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과학실험 보조원으로 채용
- ✓ 모 기관 운영국장이 기관장의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익계약 용역 발주
- ✓ 기초지자체 과장이 지역 언론사 관계자 A의 청탁을 받고, A와 연관성이 있는 연구원 B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고액의 위탁 교육비 지출
- ✓ 모 지자체에서 상수도 검침원 채용시 별도의 규정없이 관례적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동장 추천을 자격 요건으로 운영해 왔고, 검침원 결원이 발생하자 잔여기간 동안 근무할 검침원을 선발하는데 그간의 관례를 적용치 않고 임의로 채용

유형7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일선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 일선기관의 기관장들이 '기타운영비'의 경조사비 예산을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비 이외에 사적 용도의 경조사비에 지출
- ✓ 격려금, 활동비, 직원 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 등으로 사용
- ✓ 업무추진비용 관용카드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 걸쳐 2천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
- ✓ 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
- ✓ 관사·독신자 숙소관리비, 부대 운영비 등 2천만원 유용

- ✓ 관용카드로 40여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 사적 사용
- ✓ 대원 급식용 쌀 20여 포대를 납품받는 대신 거래처에서 2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
- ✓ 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유관기관 등에 창립기념품을 제공

유형8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모 군청 공무원 A가 자신의 5급으로의 승진을 정치인 B에게 부탁하고, B가 군수에게 A의 승진을 청탁
- ✓ 모 시청 국장 C가 7급 직원 D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 E에게 D의 승진을 청탁
- ✓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말해달라고 부탁

유형9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 모 시청 공원녹지과장이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이권개입
- ✓ 모 군청 환경관리과장이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 하게 해 줌
- ✓ 지방의회의원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천만원을 수수
- ✓ 공무원이 사회복지법인 허가 과정에 개입하여 금품 수수

유형10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 ✓ 도로교통법 위반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 ✓ 사업홍보 등을 위해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에 자신의 기관명칭과 직위를 표시
- ✓ 자신의 사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홍보를 위해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기재하는 행위

유형11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P시청의 도시개발국장 Y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 ✓ 건설행정부서 공무원 K는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해 수익원의 차익 실현
- ✓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

유형12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 **금전 출연**
 - 재원 마련 위해 사기업에 금전적 지원 요청, 출연 요구
 - 기업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준조세 관행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요구
- ✓ **인사, 징계**
 - 민간기업 사장(임원 등) 퇴진·교체 요구 등 인사에 간섭
 - 회사 고문(자문)자리 요구
 - 민간기업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
- ✓ **업무상 비밀**
 - 미공개 기업정보(공시 전의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 유출
 - 경영정보, 영업비밀, 기술정보 제공 요청하여 경쟁사의 조직, 인력 정보 등 유출
- ✓ **계약행위**
 - 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 특정업체 납품 요구, 일감 배정 요구
 - 특정업체의 광고, 협찬 요구(특정 업체 선정, 특혜 부여)
 - 특정 기업 기술 이용 요구(소프트웨어 개발)
 -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익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 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
- ✓ **거래행위**
 - 계약 조건 변경
 - 대출금리 인하 요구
 - 항공편 좌석 편의, 골프장 예약, 병원 입원 예약
 - 협력사와의 납기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

- ✓ **평가, 판정**
 - 입학특혜 및 학사 혜택(성적 평가 등) 부여
- ✓ **수상, 포상**
 - 특정인의 작품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청탁
 - 장학생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 ✓ **감사, 조사**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를 조작, 위법사실 은폐

유형13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
- ✓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 ✓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
- ✓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 ✓ N시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공무원 S의 개인 별장 신축현장에 사용
- ✓ 업무용으로 배정된 소형트럭을 개인의 주말 농장에 사용
- ✓ 공용 비품인 TV를 기관장의 집에서 사용

유형14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청소업체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편의를 제공받음
- ✓ 모 군청 간부공무원이 기관 행사인 1박2일 과정의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도록 지시
- ✓ 일선기관 상급자가 자신의 세탁물을 하급자로 하여금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도록 지시
- ✓ 모 기관장이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서 소속직원들을 동원

유형1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지방의 G기관장은 매주 5회 매월 20회에 걸쳐 학원에 출강하고 미신고
- ✓ D시청 U국장은 관내 C협회 회원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하여 6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고 미신고

유형16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 A부서는 업무관련 산하기관 B,C에게 인력지원을 요구, 각각 1명씩 총 2명의 인력을 비공식 파견 형태로 지원받아 이들에게 A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 A시는 관내 B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600만원을 B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
- ✓ 특별한 현안 없이 수시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접대를 받거나, 부서 화식비용을 산하기관에서 결제하도록 전가
- ✓ 간부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술자리 후 자신의 승용차를 직원이 집까지 대리운전 하도록 함

유형17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과 회식, 직원 야근 식대 등으로 사용
- ✓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동료 공무원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수수
- ✓ A도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2년 동안 청사 내에 입점하고 있는 3개 금융기관들로부터 냉장고 등 2,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무상 수수하여 체육대회 상품 등으로 사용
- ✓ 모 지자체 감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으며 격려금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전 전달

유형18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 A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B산하기관은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요구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
- ✓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감독부처의 요청을 받고 감독부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출장단을 구성하여 여비를 지원, 감독부처 공무원은 특별한 역할 없이 국제협력 명목의 해외출장을 다녀옴
- ✓ ○○의회 상임위는 해외연수를 가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행하여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비서 역할을 하게 했다는 비판

유형19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
- ✓ 모 시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사전신고 없이 직무관련자인 관내 건설업자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
- ✓ 모 구청 소속 공무원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민원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음
- ✓ 전산 시스템 도입 관련 계약 상대방인 납품업체로부터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로 취득
-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법령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직무관련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
-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



6

부 록

1. 공익신고자 보호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4.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5.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및 소관부처 목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1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벌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벌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들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 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 ⑧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들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4.>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들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들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들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들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위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익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 7. 24.>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 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 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 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 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

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 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 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 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 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 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 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 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 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 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 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 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부칙 <제17300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담당관) 044-200-7145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

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除),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으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

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설 2019. 4. 16.〉

-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중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 보고를 할 수 있다.

-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

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0. 6. 11.] 제60조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 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중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 [제목개정 2019. 4. 16.]

-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9. 4. 16.]

-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제목개정 2019. 4. 16.]

제6장 국민감사청구

-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

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의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 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시행일 : 2020. 6. 11.] 제88조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시행일 : 2020. 6. 11.] 제90조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부칙 <제16827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3



[시행 2019. 1. 14.] [경기도조례 제6015호, 2019. 1. 14., 전부개정]

경기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말한다.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6. “부패행위 신고”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7. “행동강령위반 신고”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정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8.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9.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책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신고 또는 부패행위 신고, 신변 보호조치 요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장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제6조(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6.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사항
- 7.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경기도의회 의원

- 2.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 4.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에 있는 사람
- 5.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부위원장 및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공익제보의 처리

제13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제보 내용
-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 ⑥ 공익제보자가 제5항에 따른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도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의 처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공익제보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도지사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6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불이익 금지)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한다)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 가. 지방세의 부과
 -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만,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④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상한은 두지 아니 한다.
- ⑤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도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⑧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⑨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금)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부패행위 신고 및 행동강령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임금 손실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⑤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등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3조(표창의 수여)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교육지원)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홍보 등)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6조(민원 처리의 특례) 도지사는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2019.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익제보등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4



[시행 2020. 5. 27.] [경기도규칙 제3905호, 2020. 5. 25., 일부개정]

경기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11.>
 -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신설 2019.4.29.]
 - 라. 인가·허가 등의 변경이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마.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바.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사.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차.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타.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 파. 그 밖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4.11.>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회계·조직·법령·복리후생·복무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도 소속 공무원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경기도 공무원직 등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공중보건의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1., 2020.05.25.>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하급

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목변경 2018.4.11.]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1., 2019.4.29.>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전문개정 2018.4.11.]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4.11.>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018.4.11.>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8.4.11.]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 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8.4.11.]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8.4.11.]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개정 2019.4.29.>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개정 2019.4.29.>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개정 2019.4.29.>
7.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4.29.]
8. 도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4.29.]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4.29.]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9.4.29.]
11.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4호에서 이동 < 2018.4.11. >], <개정 2018.4.11.>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1.] <개정 2019.4.29.>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1.] <개정 2019.4.29.>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4.11.] <개정 2019.4.29.>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신설 2018.4.11.] <개정 2019.4.29.>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 <개정 2019.4.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18.4.11.] <개정 2019.4.29.>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본조신설 2018.4.11.]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9.>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9.>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9.>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개정 2019.4.29.>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본조신설 2018.4.11.]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1.]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9.>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1.]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외에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만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전신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9.4.29.]

제6조 삭제 <2018.4.11.>

제7조 삭제 <2019.4.29.>

제8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도지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9.4.29.〉](#) [\[본조신설 2018.4.11.\]](#)

제14조 삭제 [〈2018.4.11.〉](#)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9.〉](#)

제16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9.〉](#)
 ②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11.\]](#)

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4.29.\]](#)

제17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개정 2018.4.11.〉](#)
2. 원활한 직무 수행(지도·단속·점검·확인·평가·감사·계약·민원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

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개정 2019.4.29.>

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금품등 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은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① 감독 · 감사 · 조사 · 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 · 행사 · 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 · 감사 · 조사 · 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예우 · 의전의 요구
2. 감독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 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독기관이 「공직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4.29.]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① 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별표 1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9.>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부강의 · 회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1., 2019.4.29., 2020.05.25.>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1.]

④ 삭제 <2020.05.25.>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④항에서 이동 <2018.4.11.>] <개정 2019.4.29., 2020.05.25.>

- ⑥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⑤항에서 이동 <2018.4.11.>], <개정 2018.4.11., 2019.4.29.>

- 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⑥항에서 이동 <2018.4.11.>] <개정 2019.4.29., 2020.05.25.>

제18조의2(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 · 경매 · 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4.29.>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본조신설 2018.4.11.]

제19조 삭제 <2018.4.11.>

제20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4.11.>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도지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제23조(징계 등)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9.>

- ② 도지사는 이 규칙에 따른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29.]
- ③ 도지사는 제2항을 제외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처리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29.]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19.4.29.>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4.29.]

1. 수수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전문개정 2019.4.29.]
2.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전문개정 2019.4.29.]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전문개정 2019.4.29.]
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전문개정 2019.4.29.]

제25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도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부패행위자 현황의 공개)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청 및 북부청의 경우 감사, 조사부서의장이 되며,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의 경우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그 밖의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19.4.29.>

제28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①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지정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 조사부서의장이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 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탁방지담당

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2016.10.31.>

이 규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제1조(시행일)

규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및 소관부처 목록

5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4	가축전염병 예방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6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행정안전부	현행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8	건강검진기본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11	건설기계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2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3	건설산업기본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16	건축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7	건축사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8	검역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20	경륜·경정법	공정한 경쟁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21	경비업법	안전	경찰청	현행
22	계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5	고용보험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26	골재채취법	환경	국토교통부	현행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현행
28	공연법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30	공인중개사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31	공중위생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32	관광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33	광산업전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3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35	교통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37	국가기술자격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38	국민건강보험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39	국민건강증진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40	국민영양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41	국민체육진흥법	공정한 경쟁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4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현행
4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정한 경쟁	법무부	현행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현행
45	궤도운송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46	근로복지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48	금융지주회사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4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5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52	내수면어업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53	노인복지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행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5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행
58	농약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59	농어촌도로 정비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60	농어촌정비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행
61	농업기계화 촉진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62	농지법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63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	환경부	현행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소방청	현행
6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66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현행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69	대외무역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70	맹간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71	도로교통법	안전	경찰청	현행
72	도로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73	도선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74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행
76	도시철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7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현행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79	동물보호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81	말산업 육성법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82	먹는물관리법	건강	환경부	현행
83	모자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8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86	문화재보호법	환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현행
8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기획재정부	현행
88	물류정책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현행
8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산림청	현행
9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	법무부	현행
94	보험업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9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소비자의 이익	기획재정부	현행
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특허청	현행
9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98	비료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9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10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현행
101	사료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02	사방사업법	환경	산림청	현행
1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104	사회복지사업법	안전	보건복지부	현행
10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10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현행
107	산림보호법	환경	산림청	현행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현행
1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11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1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고용노동부	현행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114	산업표준화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15	산지관리법	환경	산림청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16	상표법	소비자의 이익	특허청	현행
117	상호저축은행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18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의 이익	행정안전부	현행
1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
122	석면안전관리법	안전	환경부	현행
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24	선박안전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125	소금산업 진흥법	건강	해양수산부	현행
1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환경	산림청	현행
1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소방청	현행
128	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	소방청	현행
129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13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31	소하천정비법	환경	행정안전부	현행
132	송유관 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3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현행
134	수도법	환경	환경부	현행
1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건강	해양수산부	현행
136	수산업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137	수산자원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138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해양경찰청	현행
139	물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현행
140	습지보전법	환경	환경부/해양수산부	현행
141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1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43	식물방역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44	식품신품종 보호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행
145	식품산업진흥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행
146	식품안전기본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47	식품위생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50	아동복지법	안전	보건복지부	현행
15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여성가족부	현행
152	아이돌불 지원법	소비자의 이익	여성가족부	현행
153	악취방지법	환경	환경부	현행
1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56	약사법	건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57	양곡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5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15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60	어선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161	어장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162	어촌·어항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16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165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6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16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68	영유아보육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1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17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행정안전부	현행
172	외국환거래법	소비자의 이익	기획재정부	현행
173	외식산업 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7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
175	원자력안전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
176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	소방청	현행
17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7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179	유아교육법	소비자의 이익	교육부	현행
18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강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81	은행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8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1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84	의료기기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86	의료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8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	환경부	현행
188	인삼산업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8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9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의 이익	국도교통부	현행
1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산림청	현행
192	입양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193	자격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교육부/고용노동부	현행
194	자동차관리법	안전	국도교통부	현행
195	자연공원법	환경	환경부	현행
196	자연재해대책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197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현행
19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9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환경부	현행
2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202	장애인복지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204	재해구호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20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206	전기공사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07	전기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0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0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10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현행
211	전력기술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현행
2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15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2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현행
2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19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환경	행정안전부/ 국도교통부	현행
221	제품안전기본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22	종자산업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224	주택법	안전	국도교통부	현행
2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226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공정한 경쟁	보건복지부	현행
227	지역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2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229	지하수법	환경	국도교통부	현행
230	직업안정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23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	고용노동부	현행
232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33	철도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국도교통부	현행
234	철도안전법	안전	국도교통부	현행
235	청소년 보호법	건강	여성가족부	현행
236	청소년활동 진흥법	안전	여성가족부	현행
2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23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소방청	현행
239	초지법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4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현행
241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242	축산법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행
244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현행
245	폐기물관리법	환경	환경부	현행
24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4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4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건강	경찰청	현행
2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250	하수도법	환경	환경부	현행
251	하천법	환경	국토교통부	현행
252	학교급식법	건강	교육부	현행
253	학교보건법	건강	교육부	현행
2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전	교육부	현행
25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56	한국마사회법	공정한 경쟁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58	항공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259	항공보안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260	항로표지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261	항만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262	항만운송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해양수산부	현행
263	해사안전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26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26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266	해양환경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267	해운법	소비자의 이익	해양수산부	현행
268	혈액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270	화장품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271	화학물질관리법	안전	환경부	현행
27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73	환경보건법	환경	환경부	현행
2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7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환경부	현행
27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27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현행
2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금융위원회	현행
2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281	방위사업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2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경찰청	추가
2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경찰청	추가
284	재일교포 복송처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경찰청	추가
2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추가
286	청원경찰법	안전	경찰청	추가
28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추가
28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추가
2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29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29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292	임금채권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2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2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29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296	우편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297	전기통신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298	전자서명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299	방송법	소비자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추가
30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추가
30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추가
302	전파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추가
30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교육부	추가
304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교육부	추가
3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가보훈처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가보훈처	추가
30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	국무조정실	추가
3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환경부	추가
30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1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국방부	추가
3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12	군사기밀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14	군형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15	예비군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16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전	국방부	추가
317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19	병역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병무청	추가
320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3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	국토교통부	추가
3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2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26	건축물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27	공사중단 창기방지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2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29	기계설비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3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	국토교통부	추가
33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추가
33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34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35	주거급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36	주차장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3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3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3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국토교통부	추가
340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41	공공주택특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42	공항시설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43	항공사업법	공정한 경쟁	국토교통부	추가
344	공동주택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46	예금자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47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4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4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5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5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5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53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5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5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56	중소기업은행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57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안전	기상청	추가
3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기획재정부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59	담배사업법	건강	기획재정부	추가
360	국유재산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기획재정부	추가
361	귀속재산처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기획재정부	추가
36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기획재정부	추가
36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6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6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66	저작권법	공정한 경쟁	문화체육관광부	추가
36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소비자이익	문화체육관광부	추가
36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36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3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법무부	추가
3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법무부	추가
372	국가보안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7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7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75	보안관찰법	안전	법무부	추가
37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377	부정수표 단속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78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379	출입국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8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381	통신비밀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법무부	추가
38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383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38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385	의료급여법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386	결핵예방법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38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8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89	국민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0	기초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2	노후준비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4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39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3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7	아동수당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2	장애인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5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408	환자안전법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40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산림청	추가
4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4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1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13	유통산업발전법	공정한 경쟁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14	석탄산업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15	에너지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17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건강	소방청	추가
419	소방기본법	안전	소방청	추가
420	소방장비관리법	안전	소방청	추가
4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4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423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424	위생용품 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42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4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여성가족부	추가
4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추가
4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추가
429	청소년 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여성가족부	추가
4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여성가족부	추가
4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여성가족부	추가
43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추가
43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외교부	추가
43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4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통일부	추가
4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추가
437	해양경비법	안전	해양경찰청	추가
43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439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44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441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해양수산부	추가
442	선박직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443	선박평형수 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444	선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44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해양수산부	추가
44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소비자의 이익	해양수산부	추가
44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448	연안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44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45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45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45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45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추가
45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안전	행정안전부	추가
45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456	민방위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45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458	주민투표법	공정한 경쟁	행정안전부	추가
459	지방세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460	지방재정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461	소음·진동관리법	환경	환경부	추가
46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추가
4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추가
46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환경부	추가
46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환경부	추가
466	자원순환기본법	환경	환경부	추가
46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추가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 매뉴얼

발 행 일 2020년 9월

발 행 처 경기도(조사담당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우)16444

전 화 (031)8008-2395~9

팩 스 (031)8008-2059

홈페이지 경기도청 www.gg.go.kr

디 자 인 (주)아이콘커뮤니케이션 (031)245-5500